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되어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 및 환경부장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68명을 환경부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및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8명, 6급 48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의 직급과 조직의 분장사무를 반영하는 한편,

하천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신설된 직위인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을 개방형 직위에 포함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제55호”를 “제6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물정책총괄과·물이용기획과·토양지하수와·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수생태보전과·생활하수와·수자원정책과·수자원관리과”를 “물정책총괄과·물이용기획과·토양지하수와·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수생태보전과·생활하수와·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발전
5. 하천의 지정·해제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천정비사업(하도준설은 제외한다) 계획의 수립
7. 국가하천·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지침 및 규정의 수립

9.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하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12. 하천 관련 연구개발·조사 및 연구사업
13.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14.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1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7. 방수로·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18.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9. 남북간 하천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0. 대규모제방 계획의 수립
21. 친환경 하천관리에 관한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22.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23. 하천관리원·하천보수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하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수계별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단서 중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5까지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를 “제16호의5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로,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5까지의 사항은 광주광역시”를 “제16호의5의 사항은 광주광역시”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화학안전관리

단·대기환경관리단”을 “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하천국·화학안전관리단·대기환경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관리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하천공사1과·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하천공사과·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하천공사1과장·하천공사2과장·하천관리과장·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4. 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5.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9.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10.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11.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2.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13.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14.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15.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6. 하천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17. 하천공사의 기성·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
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4. 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5.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9. 하천공사의 기성·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7.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8.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9.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10.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⑧ 하천관리과장·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국가하천 한강 중 섬강 합류점 하류구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국가하천 낙동강 중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구간,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국가하천 금강 전 구간, 하천관리1과장의 경우 국가하천 영산강 전 구간, 하천관리2과장의 경우 국가하천 섬진강 전 구간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
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
2. 수문, 통문,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 하천보수원의 관리
5.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제2항 전단 중 “운영지원과·기획평가국·수질총량관리과·화학

물질관리과”를 “운영지원과·기획평가국·하천국·수질총량관리과·화학물질관리과”로, “운영지원과·기획평가국·수질총량관리과·수질관리과·화학안전관리단”을 “운영지원과·기획평가국·수질총량관리과·수질관리과·하천관리과·화학안전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측정분석과”를 “측정분석과를 두고, 하천국에는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수질총량관리과장·환경감시과장·수질관리과장·기획과장·기획재정과장·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을 “기술서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수질총량관리과장·환경감시과장·수질관리과장·기획과장·기획재정과장·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하천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의4를 제31조의5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1조의4) 제3항 중 “제28조2제2항”을 “제28조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 및 같은조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31조의4(하천국 등) ① 하천계획과장은 제28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을 분장한다.

② 하천공사과장은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하천관리과장은 제28조의2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국가하천 한강 중 섬강 합류점 상류 구간,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국가하천 낙동강 중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구간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교육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위치란 중 “경상북도 고령군”을 “대구광역시”로 하고, 같은 란의 대구광역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별표 2의 한강유역 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북한강과 그 지류, 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를 말한다) 및 금강수계는 제외하고, 강원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한탄강과 그 지류를 말한다),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섬강을 포함하지 않는 섬강 합류점 하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를 말한다) 및 충청남도 내 안성천수계를 포함한다]

별표 2의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은 제외한다)

[하천 관련 업무(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강원도 및 경상남도 하동군 내 낙동강수계를 포함한다]

별표 2의 금강유역 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충청남도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 및 충청남도 내 안성천수계는 제외하며, 경기도·전라북도 및 경상북도 내 금강수계를 포함한다)

별표 2의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제주도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하동군 내 낙동강수계는 제외하고, 전라북도 내 섬진강수계를 포함한다)

별표 3의 원주지방 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강원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한탄강과 그 지류를 말한다) 및 낙동강수계는 제외하고, 경기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북한강과 그 지류, 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를 말한다),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를 말한다) 및 경상북도 내 한강수계를 포함한다]

별표 3의 대구지방 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하천 관련 업무(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업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는 제외한다]

별표 3의 전북지방 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라북도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내 낙동강수계와 금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제외한다)

별표 6 중 총계 “615”를 “630”으로 하고, 일반직계 “609”을 “62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4”를 “25”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34”를 “35”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신설하며,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1”을 “3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7”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8”을 “6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15”를 “6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09”을 “62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4”를 “25”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34”를 “35”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신설하며,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1”을 “3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7”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0”을 “63”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25”를 각각 “740”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를 “1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20”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95”를 “132”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4”를 “92”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0”을 “74”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8”을 “38”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 다음에 “통신운영서기보 1”를 신설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26”을 각각 “741”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를 “1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을 “21”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98”을 “135”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6”을 “94”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49”를 “7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3”을 “30”으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 다음에 “통신운영서기보 1”를 신설한다.

별표 1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8”을 각각 “346”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10”으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50”을 “61”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4”를 “45”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32”를 “41”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을 “10”으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10”을 각각 “348”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다음에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관 “6”을 “11”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54”를 “64”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0”을 “51”로 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27”을 “3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8”을 “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14에 따른 정원 1명(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4의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9조제4항 · 제5항, 제26조, 제4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 제6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

1항·제13항, 제4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본문·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19조의3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의3 중 “국토해양부”를 “환경부”로 한다.

별표 5의3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중 “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관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54호서

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조제1항·제7조제1항·제8조제2항·제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제10조제5호·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민간 자격 분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무부장관	민간자격 분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리 관련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항공안전, 조경, 건축·건설 및 지적(地籍) 관련 분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④ (생략)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9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 제61호----- -----.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정책총괄과·물이용기획과·토양지하수과·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수생태보전과·생활하수과·수자원정책과·수자원관리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 물정책총괄과·물이용기획과·토양지하수과·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수생태보전과·생활하수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관리과----- -----.
⑦ ~ ⑭ (생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신설>	⑮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발전

5. 하천의 지정·해제 및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천정비사업(하도준설은 제
외한다) 계획의 수립
7. 국가하천·지방하천 정비 관
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
한 사항
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지
침 및 규정의 수립
9.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하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12. 하천 관련 연구개발·조사
및 연구사업
13.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의 보상에 관한 사항
14.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1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7. 방수로·저류지 등 하천홍
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⑮·⑯ (생략)

제24조(관할구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유역환경
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
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
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
호의5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18.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사항
19. 남북간 하천 협력 업무에 관
한 사항
20. 대규모제방 계획의 수립
21. 친환경 하천관리에 관한 지
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22.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23. 하천관리원·하천보수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하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수계별 협의체의 구성·운영
에 관한 사항
- ⑯·⑰ (현행 제15항 및 제16항
과 같음)

제24조(관할구역) -----

--. -----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 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5까지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7조제4항제16호 및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5까지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25조(유역환경청) ① (생략)
② 유역환경청에 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화학안전관리단·대기환경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제26조(총무과) ① (생략)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 제16호의5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 제16호의5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

제25조(유역환경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하천국·화학안전관리단·대기환경관리단 -----.

제26조(총무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관

8. (생략)
<신설>

리

8.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하천공사1과·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하천공사과·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하천공사1과장·하천공사2과장·하천관리과장·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측량

- 설계 ·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 5. 하천구역 · 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 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 7. 폐천부지의 양여 · 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 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 · 측량 · 설계 · 시행 및 감독

-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 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 · 측량 · 설계 · 시행 및 감독
- 4. 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 5. 국가하천의 유지 ·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7.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 9.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 10.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 11.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 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 12.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 13.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 14.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

의

15.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
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6. 하천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17. 하천공사의 기성·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측량
·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
영

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
사·측량·설계·시행 및 감
독

4. 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
집

5.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9. 하천공사의 기성·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측량
·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
영

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
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
수 및 지장물의 보상

7.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8.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9.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10.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
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⑧ 하천관리과장·하천관리1과

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국가하천 한강 중 섬강 합류점 하류구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국가하천 낙동강 중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구간,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국가하천 금강 전 구간, 하천관리1과장의 경우 국가하천 영산강 전 구간, 하천관리2과장의 경우 국가하천 섬진강 전 구간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
2. 수문, 통문,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 하천보수원의 관리
5.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제28조의3 (생략)	제28조의3·제28조의4 (현행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과 같음)
제31조(지방환경청) ① (생략)	제31조(지방환경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주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기획평가국·수질총량관리과·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과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기획평가국·수질총량관리과·수질관리과·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과를 두며, 전북지방환경청에 기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측정분석과·화학안전관리단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이 경우 기획평가국에는 기획재정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② ----- 운영지원과·기획평가국·하천국·수질총량관리과·화학물질관리과----- 운영지원과·기획평가국·수질총량관리과·수질관리과·하천관리과·화학안전관리단 ----- 측정분석과를 두고, 하천국에는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	③ ----- 기술서

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수질총량관리과장·환경감시과장·수질관리과장·기획과장·기획재정과장·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화학물질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신 설>

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
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으로, 운영지원과장·수질총량
관리과장·환경감시과장·수질
관리과장·기획과장·기획재정
과장·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
과장·환경평가과장은 행정사
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으로, 하천공사과장·하천관리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
관·환경사무관 또는 -----

제31조의4(하천국 등) ① 하천계
획과장은 제28조의2제4항 각 회
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하천공사과장은 제28조의2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하천관리과장은 제28조의2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국가하천 한강 중 섬강 합류점 상류 구간,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국가하천 낙동강 중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구간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제31조의4(수질총량관리과 등) ①

• ② (생략)

③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28조2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생략)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신 설>

2. ~ 11. (생략)

⑥ (생략)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8조3제2항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8조의2제4항 제1호부터
제10호 및 같은조 제5항 각 호
에 관한 사항

2. ~ 11.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u>교육운영과</u> 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 ----- ----- ----- ----- <u>교육운영과</u> <u>장,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u> ----- ----- ----- -----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15</u>	· <u>630</u>	+15
일반직계	· · <u>609</u>	· · <u>624</u>	+1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u>24</u>	· · <u>25</u>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u>1</u>	· · <u>3</u>	+2
행정사무관	· · <u>34</u>	· · <u>35</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u>1</u>	+1
.	.	.	
.	.	.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1</u>	<u>34</u>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3</u>	<u>7</u>	+4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8</u>	<u>61</u>	+3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u>615</u>	<u>630</u>	+15
.	.	.	
.	.	.	
일반직 계	<u>609</u>	<u>624</u>	+15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4</u>	<u>25</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	<u>1</u>	<u>3</u>	+2
.	.	.	
.	.	.	
행정사무관	<u>34</u>	<u>35</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u>1</u>	+1
.	.	.	
.	.	.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1</u>	<u>34</u>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3</u>	<u>7</u>	+4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60</u>	<u>63</u>	+3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25</u>	<u>740</u>	+115
일반직 계	<u>625</u>	<u>740</u>	+115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9</u>	<u>13</u>	+4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u>	<u>20</u>	+14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95</u>	<u>132</u>	+37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64</u>	<u>92</u>	+28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50</u>	<u>74</u>	+24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28</u>	<u>38</u>	+10
·	·	·	
·	·	·	
<u>통신운영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626</u>	<u>741</u>	+115
일반직 계	<u>626</u>	<u>741</u>	+115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9</u>	<u>13</u>	+4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7</u>	<u>21</u>	+14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98</u>	<u>135</u>	+37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66</u>	<u>94</u>	+28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49</u>	<u>73</u>	+24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23</u>	<u>30</u>	+7
·	·	·	
·	·	·	
<u>통신운영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08</u>	<u>346</u>	+38
일반직 계	<u>308</u>	<u>346</u>	+38
·	·	·	
·	·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u>	<u>10</u>	+4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50</u>	<u>61</u>	+1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34</u>	<u>45</u>	+1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32</u>	<u>41</u>	+9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8</u>	<u>10</u>	+2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10</u>	<u>348</u>	+38
일반직 계	<u>310</u>	<u>348</u>	+38
·	·	·	
·	·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u>	<u>11</u>	+5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54</u>	<u>64</u>	+10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40</u>	<u>51</u>	+1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27</u>	<u>36</u>	+9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8</u>	<u>10</u>	+2
·	·	·	
·	·	·	